

해외 입양인의 정체성 기반 정보탐색 경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country Adoptees' Identity-Based Information-Seeking Experiences

오경한 (Kyunghan Oh)**

김 건 (Geon Kim)***

초 록

본 연구는 해외 입양인의 정보추구를 정체성 기반의 의미 구성 과정으로 파악하고, 기록 접근에서 나타나는 주요 제약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해외 입양인 12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인터뷰를 진행하고, 더빈의 센스메이킹 이론에 따라 '상황-간극-이용-장애요인' 구조로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입양인은 외모 차이에서 비롯된 정체성 혼란, 친생가족·의료 정보 확인 욕구 등으로 정보 요구를 형성했으며, 입양부모가 보유한 기록 열람, 입양기관·정부기관 조회, 병원·보호시설 방문 등 단계적 탐색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기록의 불완전성, 기관별 공개 범위의 불일치, 담당자 재량,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언어 장벽 등이 의미 구성 과정 전반을 제약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 입양인의 정보탐색 경험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기록정보서비스의 표준화 및 정체성 회복 지원체계 구축에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intercountry adoptees' information-seeking as an identity-based meaning-making process and examines the structural constraints shaping their access to adoption records. Twelve adoptees participated in semi-structured interview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rvin's Sense-Making framework of situation, gap, use, and barriers. The findings show that adoptees' information needs stemmed from racialized identity confusion, curiosity about biological family members, and the desire for medical and genealogical information. Their searches followed multi-stage strategies, including reviewing records held by adoptive parents, contacting adoption and government agencies, and visiting hospitals or childcare facilities. However, incomplete records, inconsistent disclosure practices, staff discretion, restrictive interpretations of privacy laws, and language barriers significantly hindered their ability to form coherent understandings of their origins. This study provides a structured account of adoptees' identity-driven information-seeking and offers empirical grounding for standardizing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and improving institutional support for identity reconstruction.

키워드: 입양기록접근, 해외입양인, 정체성 기반 정보추구, 기록정보서비스, 센스메이킹 이론
access to adoption records, intercountry adoptees, identity-based information seeking,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sense-making theory

* 본 연구는 전북대학교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2024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 지원사업(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지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B5A19043957).

**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기록관리학과 박사수료(oh.khan0608@gmail.com) (제1저자)

***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기록관리학과 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소장(godardkim@jbn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5년 11월 12일 ■ 최초심사일자: 2025년 11월 29일 ■ 게재확정일자: 2025년 12월 5일

■ 정보관리학회지, 42(4), 45-71, 2025. <http://dx.doi.org/10.3743/KOSIM.2025.42.4.045>

※ Copyright © 2025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최근 방송과 언론에서는 입양인의 출생기록이 누락되거나 조작된 사례, 입양기록 관리 부실 및 정보 비공개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강혜인, 2024; 문준아, 2025; 정다민, 202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는 헤이그국제 아동입양협약의 비준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 입양 관련 법률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입양기록의 일원화와 사후서비스 강화를 통해 입양 전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입양기록 일원화는 그동안 민간입양기관이 개별적으로 관리해 오던 입양기록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입양기록을 찾는 이용자가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장원은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양기록물의 관리와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할 법적·제도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한편 해외 입양인의 삶을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이들이 출생지로부터 지리적·사회적·인종적으로 분리된 환경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출생 배경 및 친생가족 정보가 정체성 형성의 핵심적 기반으로 작용함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Basow et al., 2008; Meier, 1999; Triseliotis, 1973). 특히 친생가족 정보의 보유 여부는 입양인의 자아정체감과 심리적 안정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이미선, 2002).

이러한 맥락에서 해외 입양인의 기록 탐색은 단순한 과거 확인의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 회복과 생애사 재구성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었다(안재진 외, 2012). 즉, 기록은 입양인의 존재 기반을 형성하는 매개체이자, 자기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해외 입양인들은 실제 정보 접근 과정에서 언어적 장벽, 기록의 단편성, 정보 불일치, 제도적 절차의 복잡성 등 다양한 제약을 경험하고 있다(뿌리의집, 2021). 특히 민간기관 중심의 비표준화된 정보서비스 운영으로 인해, 직원의 재량에 따라 정보 제공 범위와 서비스 품질이 달라지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서비스의 표준화와 공공성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다(정애리 외,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입양인이 어떠한 상황에서 출생·정체성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되는지, 그 간극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떤 방식으로 탐색을 수행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입양인의 정보행위를 단순한 기록 열람이나 서비스 이용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정체성·출생정보 탐색이라는 생애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양인의 정보추구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는, 그들이 마주하는 정보 요구, 탐색 전략, 장애 요인, 그리고 의미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더불어 정체성 회복 과정에서 제도적 환경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외 입양인의 정체성·출생정보 탐색 경험을 중심으로 정보추구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그 결과를 토대로 해외 입양인을 위한 기록정보서비스의 구조적 개선 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입양인의 정보접근권과 정체성 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국가 기록정보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제도적 표준화 논의에 학문적·사회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연구 질문(Research question)은 다음과 같다.

- RQ1. 해외 입양인은 어떤 상황에서 정체성·출생정보에 대한 정보 요구를 형성하는가?
- RQ2. 정보 탐색 과정에서 어떠한 의미적·정서적 간극(gap)을 경험하는가?
- RQ3. 이러한 간극을 매우기 위해 어떠한 정보추구 및 이용 행위를 수행하는가?

2. 선행연구

2.1 입양인의 정체성 연구

입양인의 정보이용은 자신의 생물학적 뿌리와 정체성을 이해하려는 심리적 동기에서 비롯된다(March, 1995). 이는 과거의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Triseliotis(1973)는 입양인이 이러한 질문에 직면할 때, 정체성의 연속성을 구성할 수 있는 정보의 부재와 생물학적 가족과의 단절로 인해 심리적 공백감을 경험한

다고 지적하였고, Sants(1964)는 이를 ‘계보적 혼란(genealogical bewilderment)’ 개념으로 구체화하였다. 이 개념은 생물학적 출신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거나 불확실할 때 입양아동이 정체성의 혼란과 불안을 겪는다는 점을 설명하는데, 출생증명서나 생년월일의 불확실성이 정체성 혼란을 유발한다는 Darnell et al.(2017)의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미션(2002), Basow et al.(2008), Song과 Lee(2009)의 연구에서는 친생가족에 대한 정보가 많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한다고 분석하였다. 즉, 정보의 결핍은 단순히 기록이 없다는 의미를 넘어, 자신이 누구인지 규정할 근거를 상실하게 만드는 심리·사회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편 정체성 탐색이 개인의 심리적 요인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제도와 환경의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예컨대 국제·인종간 입양 환경에서 성장한 한국계 입양인은 양육가정의 문화·인종적 맥락 속에서 민족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친다(Huh & Reid, 2000). Meier(1999)과 Walton(2015)는 입양인이 한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냄새, 소리, 공간 등 감각적 경험을 통해 정체성을 재구성한다고 분석하였다. Shiao와 Tuan(2008), Stein과 Hoopes(1985), Tieman et al.(2008)은 입양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오히려 입양 당시의 상황, 양육 환경, 주변 관계, 사회적 맥락 등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하면서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입양인의 정보이용 경험 또한 정체성 형성과 연결된 과정으로, 결국 정체성

은 정보, 경험, 그리고 환경이 맞물려 작동하는 맥락적이고 과정적인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양인의 정보추구와 정체성 탐색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제도적 환경과 정책적 지원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안재진 외(2012)는 입양이 단일 사건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친 지속적 경험임을 보여주며, 성인 입양인을 위한 사후 지원 체계와 상담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Hoffman과 Pena(2013)는 정체성 탐색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대학 등 사회적 지원의 부재를 지적하며, 제도적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개방적 입양 제도와 기록 공개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한 Triseliotis(1973)의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요약하자면, 입양인의 정체성은 생물학적 정보, 개인의 경험, 그리고 사회적·제도적 환경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복합적 과정이다. 정보의 결핍은 정체성 혼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정보 접근과 해석의 맥락, 그리고 제도적 지원의 유무가 정체성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입양인의 정보추구 경험을 분석할 때에는 심리적 동기뿐 아니라, 정보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과 제도적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정보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표준화된 지원 체계 구축은 입양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정체성 회복을 돕는 핵심적인 기반이 됨을 시사한다.

2.2 정자 기증 출생 자녀의 정보이용행태 연구

해외 입양인의 정보이용행태를 직접적으로

다룬 선행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사한 맥락을 지닌 정자 기증 출생 자녀(이후 정자 기증 자녀)의 정보이용행태 연구를 참고함으로써, 입양인의 정보이용 과정을 조명하고자 한다. 정자 기증 자녀 역시 자신의 생물학적 뿌리와 정체성을 이해하려는 강한 동기를 지니고 있고, 제도적 장벽, 심리적 위기, 사회적 낙인 등 복합적인 맥락 속에서 정보를 탐색한다는 점에서 해외 입양인과 중요한 공통점을 가진다. 특히 이들의 정보이용은 기존의 일상적 정보이용이론(ELIS)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나는 복합적 탐색이라는 점에서, 해외 입양인의 정보이용 경험을 해석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Clemens와 Cushing(2010)은 기존 정보이용행태 연구가 주로 일상생활이나 직장 환경이라는 일반적 맥락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정체성 기반의 복합적 탐색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정보행태 연구의 지평을 제3의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Cushing(2010)은 정자 기증자 자녀들이 의료기록 확인, 졸업앨범 및 유사 인물 탐색,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기증자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음을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을 '정체성의 절반만 알고 있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정보탐색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자아 이해와 서사 완성의 과정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특징은 해외 입양인의 정보이용 행태와도 밀접하게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또한 Mahlstedt et al.(2010)는 정자 기증자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야 자신의 출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신원과 관련된

정보가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비밀주의적 입양제도에서 기록 접근이 제한되는 해외 입양인의 현실과 유사하다. 더 나아가 Ravelingien et al.(2013)는 기증자 자녀의 탐색 동기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의료적 위험 회피, 근친혼 방지, 생물학적 뿌리 확인, 자기 서사 완성, 권리 주장 등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보를 통해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 의미를 재구성하는 행위를 수행하고 있었다.

Turner와 Coyle(2000)는 정자 기증자 자녀의 정체성 경험을 분석하며, 출생 사실 인지 시점에서 충격과 배신감, 계보적 혼란, 정체성 단절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제도적 장벽에 부딪힐 경우 상상과 서사적 보완을 통해 정체성의 공백을 메우려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정보 부재가 개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보 접근 제한이 곧 정체성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정자 기증자 자녀의 정보이용은 정체성 형성과 긴밀히 얽혀 있으며, 제도적 환경에 의해 강하게 제약되고, 탐색 경로가 개인화되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정보는 단순한 사실적 자원이 아니라 자아 서사를 구성하고 정체성을 정립하는 상징적 자원으로 기능하며, 탐색의 실패는 곧 정체성의 위기로 직결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해외 입양인의 정보이용 경험을 해석하는 데 유의미한 비교 사례가 되며, 기존의 일상적 정보이용이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전환적 정보행태를 이해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3. 이론적 프레임워크

더빈(Brenda Dervin)은 센스메이킹(Sense-Making) 이론을 제시하여, 인간이 자신이 처한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정보 요구를 어떻게 구성하며 활용하는지를 설명하였다(Dervin, 1983). 이 이론은 기존의 정보이용 연구가 전제해 온 정보 개념과 접근 방식과 명확히 구별되며, 세 가지 핵심 관점을 제시한다(Dervin, 1992; 1999).

첫째, 불연속성(discontinuity)에 대한 관점이다. 전통적 정보이용 연구는 정보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로 보고, 이용자는 이를 수동적으로 전달받는 존재로 간주하였다. 이때 세계와 인간 사이에는 단절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보는 변형 없이 전달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반면 센스메이킹은 인간 경험의 본질을 불연속성으로 본다. 시간, 공간, 사회적 관계, 언어, 제도, 메시지, 개인 간에는 항상 간극(gap)이 존재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간극을 인식하고 이를 메우기 위한 행위를 통해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한다.

둘째, 행위자 시점의 강조이다. 기존 연구가 시스템이나 정보 전달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센스메이킹은 정보 이용의 주체인 개인의 행위와 맥락을 중심에 둔다. 즉, 정보 행위의 분석 초점은 외부 관찰자나 시스템이 아니라, 특정 상황 속에서 간극을 경험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을 구사하는 이용자 자신에게 있다.

셋째, 상태(state) 중심에서 과정(process)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전통적 연구에서는 정보 요구를 고정된 상태로 간주하여 성별, 연령, 직업 등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러나 센

스메이킹은 정보 요구를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특정 순간의 상황 정의와 인식된 간극, 그리고 이를 메우기 위해 선택된 전략과 전술 속에서 끊임없이 형성되는 동적 과정으로 본다.

결국 센스메이킹 이론을 적용한 연구의 핵심은, 이용자가 어떤 상황에서 간극을 인식하고, 그 간극을 어떻게 정의하며, 이를 메우기 위해 어떠한 전략과 자원을 활용하는가를 탐구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정보이용을 정태적 상태가 아니라, 맥락적이고 역동적인 인간 행위로 이해하는 분석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해외입양인의 정보이용 연구에서 센스메이킹 이론은, 입양인이 기록의 단절과 정보의 불확실성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분석 틀로 작용한다.

4.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해외 입양인의 정보추구와 이용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입양인 커뮤니티와 단체 운영자에게 연구 주제와 목적, 그리고 진행 절차를 설명하는 이메일을 발송하고, 참가자 모집 공고 게시물을 요청하였다. 이후 NGO 단체와 해외 입양인 대상 페이스북 그룹 운영자의 협조를 통해 총 15명의 참여 의사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 중 입양기록 탐색 경험이 없거나 단순히 기록 찾기에 대한 도움을 요청한 3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2명의 해외 입양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선정된 참가자들에게 연구자 소개,

연구의 배경과 목적, 수집된 자료의 활용 범위, 그리고 구글 설문지 URL 등을 영어로 명시한 안내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구글 설문지는 참가자의 일반적 배경(나이, 성별, 국적, 한국어 능력, 학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또한 영어권 국가 외 지역에 거주하는 참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로 작성된 인터뷰 질문지를 사전에 제공하여 인터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해외 거주자였기에, 사전에 합의된 일정에 따라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Zoom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기간은 2024년 12월 06일에 시작하여 2025년 1월 16일에 마무리 하였다.

입양은 개인적이고 민감한 주제를 포함할 수 있어, 참가자들이 응답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논문에 기재되는 내용 또한 익명으로 처리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하였고, 이에 참가자 전원이 개인정보 보호 및 익명 처리에 동의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특정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어 해당 기관의 정보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기관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대신 영문 이니셜로 표기하여 기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인터뷰는 참가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기반으로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여 참가자가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질문 내용은 입양인의 정보추구 및 이용 경험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록을 탐색하게 된 동기, 정보추구 방법, 확보한 정보의 내용 및 활용

방식, 탐색 과정에서의 장애 요인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설계하였다. 각 인터뷰는 1인당 약 60~90분 동안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연구자가 직접 전사하였으며, 이후 질적 분석 소프트웨어 Taguette를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12명의 참가자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정보 탐색의 흐름을 중심으로 코딩 체계를 설정하였다. 참가자 대부분이 정체성과 뿌리찾기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입양부모가 보유한 기록을 제공하면서 탐색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를 1차 탐색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입양기관이나 정보기관을 통해 기록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시도를 2차 탐색, 친생부모와의 접촉을 통해 기록을 확인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얻은 과정을 3차 탐색으로 구분하였다.

각 탐색 단계는 '상황', '간극', '이용', '장애요인', '서비스'의 다섯 가지 하위 범주로 세분화하여 코딩하였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가 "나는 우리 부모님과 피부색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와 닮은 사람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내 탐색의 동기예요."라고 진술한 경우, 이는 1차 탐색의 상황적 동기로 분류되어 '1. 상황_뿌리찾기', '1.상황_동기'라는 태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더빈(Brenda Dervin)의 센스메이킹 이론에 근거하여, 개인이 정보 탐색 과정에서 경험하는 '상황-간극-이용'의 구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분석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는 1차, 2차, 3차 탐색 단계에서 참가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정보 요구가 발생하였는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탐색·이용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장애 요인에 직면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파

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해외 입양인의 정보 추구 경험을 시간적 흐름과 맥락적 배경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보 탐색 과정의 특징을 다층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5. 결과 분석

5.1 참가자의 배경 정보

본 연구의 참가자는 총 12명으로, 남성 1명과 여성 11명으로 구성된다(〈표 1〉 참고). 참가자의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고, 40~5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한국에서 출생하였고, 입양 국가는 미국(5명), 독일(4명), 벨기에(2명), 호주(1명)로 구성되었다. 입양 시기는 출생 직후부터 만 8세까지 다양하였으나, 절반 이상이 0~3세 사이에 입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참가자의 비율이 높아 남성 참가자를 추가로 모집하려 하였으나, 1970년대까지 입양 아동 중 여아의 비율이 남아보다 약 2.6배 높았고, 1980년대에 이르러 남아의 비율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Park, 1995). 또한 참가자 9는 입양인 커뮤니티에서 여성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높다는 점을 언급하고, 이는 당시 한국 사회의 남아 선호 경향과 여아를 '경제적 부담(a financial burden)'으로 인식한 사회적 분위기가 여아의 해외입양 비율을 높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참가자 성비는 과거 여아의 입양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시대적 배경과 입양 커뮤니티

〈표 1〉 참가자의 배경 정보

NO.	나이	성별	국적	입양시기	학력	한국어 수준
1	50대	남	벨기에	약 4~5세	학사	초급
2	40대	여	벨기에	2일	학사	초급
3	50대	여	미국	9개월	학사	-
4	50대	여	독일	18개월	석사	초급
5	50대	여	미국	약 8세(서류상6세)	학사	초급
7	50대	여	미국	24개월	학사	초급
8	40대	여	독일	7개월	학사	-
9	40대	여	독일	7개월	학사	중급
10	30대	여	호주	0세	학사	초급
11	40대	여	미국	6개월	학사	초급
12	40대	여	독일	11개월	학사	초급

티에서 기록 탐색이나 친생부모 찾기를 시도하는 입양인 중 여성이 많은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기에 추가모집없이 진행하였다.

참가자 전원의 최종 학력은 학사 학위 이상이고, 한국어 능력에서 9명은 이제 막 배운 수준이었고, 1명은 일상 생활에 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2명은 전혀 모른다고(-) 하였다.

5.2 정보추구 과정 및 이용 경험

연구자는 참가자들에게 입양기록을 탐색하게 된 동기,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수단, 기록을 요청한 기관에서의 서비스 경험, 그리고 탐색 과정에서 직면한 장애 요인에 대해 질문하였다. 모든 참가자는 공통적으로 입양 당시 입양알선기관(이후 입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1차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가운데 10명은 입양부모를 통해 기록을 확보했으나, 참가자 5와 6은 입양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기관을 통해 처음으로 기록을 입수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참가자 5

는 입양부모가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이를 열람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부모 사망 후 해당 기록이 폐기되었다고 밝혔다. 참가자 6은 성인이 된 이후 입양부모와 연락이 끊기면서 기관에 직접 기록을 요청해 확보했다고 진술하였다.

〈표 2〉에서 보이듯, 참가자들은 여러 기관과 경로를 통해 입양기록을 요청하고 확보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첫 번째 단계는 입양부모로부터 기록을 받는 절차로, 이를 '1차 탐색'으로 구분하였다. 1차 탐색 단계에서는 입양부모가 보유한 기록을 요청하거나 열람하게 된 계기, 그 안에서 찾고자 한 정보, 그리고 기록을 활용한 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참가자들의 2차 탐색 절차는 입양기관과 정부기관 등 공식기관을 통해 기록 사본을 요청하거나 방문하여 원본을 열람하는 것이었다. 다수의 참가자는 입양기관에 직접 방문해 여러 차례 원본을 열람한 대면 경험과 비대면 경험이 있었다. 세 명의 참가자(3, 5, 10)는 정보공개청구, 이메일, 전화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만 기관에 기록을 요청하여 사본을 수령하였다.

〈표 2〉 참가자의 요청 단계별 기관과 면접 여부 비교

No.	1차 탐색	2차 탐색		3차 탐색
		요청기관	요청방법(횟수)	
1	입양부모	H사(한국)	대면(4)	○
2	입양부모	H사(한국), NCRC*	대면(4), 비대면	○
3	입양부모	H사(한국, 인터네셔널), NCRC, USCIS**	비대면	×
4	입양부모	H사(한국), 경찰서	대면(2), 비대면	×
5	-	H사(한국), 미국 입양기관, USCIS	비대면	×
6	-	E사(한국), 미국 입양기관, NCRC, USCIS, 한국 영사관	대면(4)	×
7	입양부모	H사(한국), 독일 입양기관, 병원(한국)	대면(2), 비대면	×
8	입양부모	H사(독일, 한국), 마산 고아원	대면(3), 비대면	×
9	입양부모	E사(한국), NCRC	대면(2), 비대면	×
10	입양부모	H사(인터네셔널, 한국), NCRC	비대면	×
11	입양부모	H사(한국), 독일 입양기관, 포항 병원, 경찰서	대면(2)	×
12	입양부모	E사(한국)	대면(3)	○

* NCRC(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
 ** USCIS(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참가자들의 3차 탐색 절차는 친생부모와의 재회였다. 전체 참가자 중 세 명만이 실제로 친생부모를 만난 경험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입양기록을 통해 형성된 의문점이나 확인하고자 했던 정보를 친생부모에게 직접 질문하였고, 친생부모는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회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만남은 기록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았던 정보의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과정으로 작용하였다.

친생부모를 찾지 못한 9명의 참가자는 입양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어디에서 어떤 기록을 얻을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사회복지사가 기록을 더 적극적으로 제공하는지 등에 관한 사례를 공유하며 정체성 및 뿌리찾기를 이어가고 있었다. 일부 참가자는 여전히 부모 찾기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여러 시도를 했음에도 새로운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로운 단서나 유의미한 정보가 확인될 경우, 다시 탐색을 시도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5.2.1 1차 탐색: 입양부모 보유 기록

참가자들의 탐색 동기는 정체성 인식, 뿌리 찾기, 생물학적·의료 정보 확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친구, 동료, 입양부모가 모두 백인인 환경에서 성장하며 자신이 주변과 다르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달았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경험은 민족적 정체성과 출생 배경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으며, 일부는 자신의 건강이나 가족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었다. 참가자 8은 일상적으로 출신지 관련 질문을 자주 받으면서, 점차 자신의 출생지와 배경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이 항상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왔어?” 그러면 제가 “한국이요” 하면, “중국 아니고?” 이렇게 되묻곤 했어요. 여기가 작은 도시라 그런

지, 사람들은 제가 좀 다르게 생겼다고 자주 말했어요.” (참가자 8)¹⁾

참가자 1과 10은 어린 시절에 자신이 아시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아시아인으로 보이는 것을 피하거나 부정하며 지내려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과 거리를 두고자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참가자 1은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국 가장 자연스러운 일임을 깨닫고, 기록 탐색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참가자 10은 자녀가 자신과 같은 혼란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신의 역사와 뿌리를 찾기 위한 탐색을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처음에는 아시아와 관련된 건 뭐든 다 싫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관계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정하고 화가 나 있었고, 아시아에 관한 모든 것에 반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참가자 1)

“...어렸을 땐 제가 아시아인이라는 게 정말 싫었어요. 여기서는 인종차별이 심했거든요. 주변이 전부 백인이라, 그냥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매일 같이 인종 비하 발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제 뿌리를 더 알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처럼 혼란스럽게 느끼지 않게 해주고 싶었어요. 자기 정체성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요.” (참가자 10)

10명의 참가자는 공통적으로 친생가족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에게 형제자매나 부모가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어떤 사정으로 입양이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특히 참가자 5는 여덟 살이라는 비교적 늦은 시기에 입양되면서 친오빠와 생이별을 했던 경험이 있으며, 오빠를 다시 찾기 위해 기록 탐색을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입양될 때 친오빠랑 헤어졌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찾고 있어요. 그게 제일 큰 이유예요. 그리고 제가 발견됐거나 버려졌다고 적힌 ‘정확한 장소’도 알고 싶었어요. 저는 조금 나이가 들어 입양돼서 한국에 대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 기억이 맞는지 기록으로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참가자 5)

참가자 11은 자신의 성격이나 행동을 오랫동안 개인적인 특성으로만 여겨왔으나, 어느 순간 그것이 친생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참가자는 이러한 깨달음이 자신 안의 한국성에도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으며, 그로 인해 한국문화와 친생부모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직접 찾아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어떤 글을 봤는데,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 60%는 유전, 40%는 자라온 환경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안에도 60%의 ‘한국적인 무언가’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제 성격이나

1) 본 논문에 명시된 인용문은 연구자가 영어로 전사된 참가자의 대화 내용을 직접 번역한 것이다.

습관 행동 같은 걸 그냥 내 성향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 친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흥미롭고 새삼스럽게 느껴졌어요.” (참가자 11)

또한 참가자 6, 7, 12는 의료기록 및 유전병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기록을 탐색하였다. 특히 참가자 6은 어린 시절부터 앓은 질병으로 인해 가족 병력과 건강 상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참가자 7은 뿌리찾기와 함께 가족 병력이나 건강상의 문제 여부를 알고 싶어 기록 탐색을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내 뿌리가 어디인지, 내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게 제일 처음 시작이었죠. 세상 어딘가에 나랑 닮은 사람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진 건 의학적인 정보였어요. 가족 중에 어떤 질병이나 건강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독일에서 병원에 가면 항상 ‘가족 중에 암 병력이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저는 매년 ‘모릅니다. 저는 입양됐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참가자 7)

참가자들은 입양기록을 통해 생물학적 가족의 정보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발견 및 보호조치 경위, 양육 포기 사유, 형제자매 여부, 건강 및 의료 정보, 보호시설의 관찰 기록 등을 확인하고자 했다. 그러나 다수의 참가자는 실제 기록에서 친생부모 정보가 ‘미상’ 또는 ‘불명’으로 표기되어 있었으며, 출생지나 생년월일이 누락되거나 임의로 작성된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친생부모 정보가 ‘미상’

또는 ‘불명’으로 기재된 것은 입양아동이 유기되었거나 발견된 상태에서 입양 절차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참가자 1은 부모의 이름이 ‘미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점에 의문을 느끼며 혼란스러웠다고 말했다.

“부모님 이름을 찾고 싶었어요. 제 한국 이름이 ‘박OO’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서를 보니까 제 이름은 적혀 있는데, 아버지랑 어머니는 미상으로 되어 있었어요. 부모가 미상이라면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참가자 1)

참가자 3은 어린 때부터 입양부모에게 친생부모의 사정에 대해 자주 들었다고 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냈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실제 입양기록을 확인해보니, 자신이 부모에게서 인계된 것이 아니라 ‘유기된 아동’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부모 정보 또한 ‘불명’으로 되어 있었다. 입양부모가 알고 있던 이야기와 기록의 내용이 전혀 달랐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부모님은 제가 가난한 농부 부부의 막내딸이라서 입양됐다고 알고 계셨어요. 어느 날 집 지하실에서 기록 상자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불명’이란 ‘유기’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받은 이름이 제 본명이 아니고, 이름 없이 들어왔다는 내용도 있었죠. 부모님이 해준 이야기랑 달라서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제 이름도 고아원에서 지어준 거였고, 출생지는 ‘불명’으로 돼 있었어요.

기록에 적힌 주소도 위탁모가 살던 곳이었고, 생년월일도 고아원에서 임의로 정한 거였어요.” (참가자 3)

참가자 5는 어릴 때부터 기록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 나이는 여덟 살이었지만, 기록에는 여섯 살로 기재되어 있었다. 참가자는 영어를 배우고 나서야 자신이 여덟 살이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양부모가 받은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고 느꼈어요. 어머니는 제가 여섯 살이라고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영어를 배우고 나서 제가 “여섯이 아니라 여덟 살이에요”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제 실제 나이를 확인하려고 소아과랑 치과를 찾아가셨어요.” (참가자 5)

이처럼 많은 입양기록에는 ‘미상’ 또는 ‘불명’으로 처리된 항목이 존재했으며, 이는 단순한 정보 누락이 아니라 제도적 절차와 깊이 연관된 결과였다. 참가자 7은 이러한 상황의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대부분의 입양기록에는 ‘부모 불명’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 기록도 거의 그런 식이었죠. 사실 이런 표기가 많은 이유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부모가 없거나 고아로 분류돼야만 해외 입양이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보육원이나 입양기관에 맡겨졌고, 보통 부모나 친척이 데리러 올 수 있도록 2주 정도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아무도 나타나지 않으면 ‘부모 불명’으로 기록했어요.” (참가자 7)

정리하자면, 참가자들은 입양부모가 보유한 기록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 뿌리, 그리고 생물학적·의료 정보를 확인하고자 했다. 백인이 다수인 환경에서 성장한 이들은 외모의 차이로 인해 정체성 혼란을 경험했으며, 이에 따라 뿌리 찾기와 가족력 확인이 주요 탐색 동기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록에는 ‘미상’이나 ‘불명’ 등 불완전한 정보가 많았고, 일부에서는 출생지나 나이가 임의로 작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불일치는 입양 절차상 아동을 ‘고아’로 분류해야 했던 제도적 요건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참가자들은 추가적인 탐색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부족한 단서를 보완하기 위해 기관 열람, 사본 요청, 현지 방문 등으로 탐색을 이어갔다. 다음 2차 탐색에서는 입양기관과 정부기관을 통한 공식 기록 접근의 양상이 중심적으로 나타났다.

5.2.2 2차 탐색: 기관 보유 기록

모든 참가자는 1차 탐색을 통해 자신이 어느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었는지를 알고 있었으며, 대부분은 입양기관에 이르기 전 거쳤던 보호시설, 경찰서, 병원의 이름이나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민간 입양기관을 먼저 방문해 2차 탐색을 진행하며 추가 기록을 열람하거나 확보했고, 그 다음 단계로 보호시설, 경찰서, 병원 등의 기관을 방문했다. 이러한 탐색 순서는 자신이 보유한 사본과 민간 입양기관의 원본 기록을 대조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한 뒤, 보다 확실한 단서를 바탕으로 추가 정보를 찾으려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10명의 참가자는 원본과 사본을 비교했을 때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참가자 9는 친생부모의 이름을, 참가자 2는 위탁모의 이름과 사진을 기관 기록에서 새롭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출처에 따라 정보가 달랐어요. 예를 들어, 제 친부모님 이름은 양부모님이 받은 문서에는 있었는데, 제가 E사를 통해 받은 문서에서는 빠져 있었어요.” (참가자 9)

참가자들은 2차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공개 범위의 불확실성’, ‘기록정보의 불일치’, ‘정보 왜곡’을 언급하였다.

1) 공개 범위의 불확실성

공개 범위의 불확실성은 기록의 존재 여부 자체보다는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이 담당자나 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6명의 참가자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자 2는 1차 기록과 2차 기록에서 자신이 어릴 때 ‘유기’되었으며 친부모 이름이 ‘미상’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후 예상치 못하게 기관으로부터 친생모와의 만남을 제안하는 전화를 받았다. 참가자 2는 “유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친생모와 연결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며 혼란스러움을 표현하였다. 이 경험은 기관이 공개하지 않은 제3의 기록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의심을 더욱 강화시켰다. 특히 자신과 친생모를 연결해준 직원이 기관의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참가자는 기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진술하였다.

“직원이 기록을 확인해보고 추가 정보를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2주쯤 뒤에 전화가 오더니 ‘친모를 찾았는데, 지금 H사로 오실 수 있나요?’라고 하더라고요. 벨기에 기록에는 제가 유기 아동이고, 어머니가 미상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기록에 엄마의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가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몇 달 뒤에 우리를 연결해 준 직원이 해고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기관 정책을 어겼다는 이유였죠. 저는 그 직원이 우리 재회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해고된 걸 듣고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때부터 2024년에 받은 2차 기록, 그러니까 기관 기록이 진짜 제 파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엄마의 이름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세 번째 버전의 기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참가자 2)

참가자 3은 미국 정보공개법(FOIA)을 통해 두 차례 기록을 요청했을 때, 공개 분량과 비식별 처리 범위가 달랐으며 담당자 재량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컸다고 진술하였다.

“미국에서 정보공개법(FOIA)으로 두 번 신청했어요. 첫 번째는 더 많은 정보를 받았지만 8쪽이 가려져 있었고, 두 번째는 50쪽 정도 받았는데 대부분 중복된 내용이었어요. 문제는 담당자 재량에 따라 공개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의 못 받기도 하거든요. 또 주(state) 단위로 FOIA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제가 사는 미시간 주는 법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참가자 3)

다수의 참가자는 명확한 이유없이 모든 기록에 대한 열람 및 사본 제공을 거부당했다고 진술한다. 참가자 6은 입양기관에서 명확한 이유없이 모든 기록의 사본 제공을 거부당했으며, 비공개 정보가 있을 시에 어떤 공개·비공개 기준이나 그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모든 서류의 사본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거절당한 게 가장 힘들었어요. 직원은 그냥 ‘줄 수 없는 서류가 있다’고만 했지, 어떤 종류의 문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기관이 왜, 혹은 어떤 법 때문에 전체 기록을 공유할 수 없는지 알려줬다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런 설명은 없었어요. 물론 설명 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해도, 저는 그게 제 기록이라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지는 않았겠지만, 최소한 이유라도 알고 싶었어요.” (참가자 6)

참가자 7은 한국의 한 입양기관에서 기록 사본 제공, 사진 촬영, 메모 허용 여부 등이 담당 사회복지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기관 내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며, 담당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정보 접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건(사본 제공, 사진 촬영, 메모) 전적으로 담당 사회복지사한테 달려 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허락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메모를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된다며 막는 사람도 있어요.” (참가자 7)

또한 참가자 7은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친구 사례를 언급했다. 참가자는 기관이 입양인에게 공개하는 정보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제 친구 이야기인데, H사에 갔을 때 30분 동안 ‘정보가 없다, 도와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친구가 울기 시작하자, 그 직원이 결국 친생모의 이름을 알려줬대요. 그 덕분에 부산에서 어머니를 찾을 수 있었어요. 수년 동안 정보가 없다고만 했었는데 결국 있었던 거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참가자 7)

이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공개 범위의 불확실성은 기록의 존재 여부보다는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 의해, 그리고 어떤 시점에 제공되는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명확한 기준과 절차의 부재, 담당자의 재량적 판단, 기관별 운영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입양인들은 정보 접근 과정에서 혼란과 불신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기록 접근권의 실질적 보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불확실성은 입양인이 자신의 과거와 정체성을 이해하는 과정을 근본적으로 제약하고 있다.

2) 기록 간 불일치와 정보 왜곡 가능성

입양인의 기록 탐색 과정에서는 동일한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기관이나 시점에서 작성된 기록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일부 서술이 왜곡된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불일치

는 1차 기록과 입양기관 기록을 대조할 때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보호시설·병원·경찰서 등 제3의 기관에서 확보한 기록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참가자 4, 7, 8, 11). 특히 참가자 4는 자신의 1차 기록, 입양기관에서 받은 2차 기록, 보호시설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는데, 각 기록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다르게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처음 (보호시설) 입소일이 1975년 11월 4일이었는데, 그게 제 생일로도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의사가 제가 한 달쯤 더 어려 보인다고 판단했는지, 다른 기록에는 12월 4일로 바꿔놨더라고요. 또 다른 의사는 1월 8일로 써놨고요. 결국 양부모님이 받은 기록에는 12월 4일로 되어 있었어요.” (참가자 4)

참가자 7은 한국 입양인의 여권이나 출생증명서에 출생지가 ‘서울’로 기재된 사례가 다른 입양인들 사이에서도 흔하다고 말했다. 본인 역시 실제 출생지는 포항이었지만, 기록상에는 서울로 표기되어 있었다. 또한 기록에 ‘거리에서 유기되었다’고 적혀 있었으나, 병원 확인 결과 해당 병원에서 출산 후 아기를 두고 간 경우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는 출생지 표기나 발견 경위가 행정적 편의나 제도적 절차에 따라 왜곡되거나 단순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저는 실제로 서울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편의상 많은 한국 입양인의 여권이나 출생증명서에는 출생지가 ‘서울’로 적혀 있어요. 아마 ‘서울, 대한민국’이라고 쓰는 게 외국인들에게

더 익숙하고 이해하기 쉬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포항이나 다른 지역 이름은 생소하니까요... 제 경우도 그랬어요. 기록에는 병원 앞 거리에서 발견됐다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그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 ‘그건 H사가 기록을 작성할 때 쓰는 표현일 뿐이고,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 아이는 병원에서 태어났고, 친모가 병원에 두고 간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참가자 7)

참가자 8은 보호시설을 여러 차례 방문해 직원에게 기록 열람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끝에, 해당 시설에서 보관 중이던 관련 문서를 직접 입수했다고 진술했다. 그 기록에는 H사에서 제공한 내용과 다른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H사 기록에는 ‘병원에서 발견’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보호시설 기록에는 ‘하천에 유기’되었다고 적혀 있었다. 참가자 8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서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큰 혼란을 느꼈다고 말했다.

“H사 기록에는 제가 병원 앞에서 발견됐다고 되어 있었는데, 보육원 기록에는 작은 하천 근처에서 비닐봉지에 싸인 채로 발견됐다고 적혀 있었어요. 홀트에서 들은 내용이라는 많이 달랐죠.” (참가자 8)

참가자 11은 입양인 커뮤니티를 통해 H사가 보관 중인 기록이 실제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기관 기록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후 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과정에서 ‘친모의 편지’를 발견했고, 그 편지에는 자신의 본명과 생일, 출생 시각까지 구체적으로 적

혀 있었으며, 입양기록의 정보보다 이러한 정보가 신뢰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참가자는 아동이 보호시설을 거쳐 입양기관으로 인계될 때 기록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입양기관이 이런 핵심 기록을 보유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매우 이례적으로 여겼다. 이는 기록 이관과 관리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선택적으로 전달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보육원에는 입소 당일에 작성된 한 장짜리 문서만 있었어요. 제 이름, 생일, 발견된 곳, 입소 일시 같은 기본적인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육원에서 제 친부모님의 편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는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그 편지에는 제 본명과 생일, 심지어 출생 시각까지 적혀 있었어요.” (참가자 11)

또한 참가자 11은 기관 기록에는 자신이 ‘고아’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보호시설 기록에는 친모에 의해 ‘인계’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참가자는 이러한 서술상의 차이가 왜 생겼는지 이해하기 위해 입양인 커뮤니티에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해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입양 절차상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아동의 출신 배경이 ‘발견’ 또는 ‘유기’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제가 들은 바로는, 입양을 하려면 공식적으로 ‘고아’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망했거나, 어딘가에서 발견된 경우여야 입양

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제 부모 중 한 분이 직접 저를 데려다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고아로 분류될 수 없는데, H사 기록을 보면 저를 공식적으로 고아로 만들기 위해 정보를 편집한 것처럼 보여요. 입양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요... H사 기록에는 ‘목포 접수센터에서 발견하여 시청으로 인계하였고, 이후에 보육원’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보육원에서도 그 정보의 출처를 모르겠다고 했고, 일부는 지어낸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 정보라면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원래 가진 정보도 적은데, 그마저도 틀리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죠.” (참가자 11)

참가자 4, 7, 8, 11 등 네 명은 입양기관에서 제공받은 기록보다 보호시설, 병원, 경찰서 등 제3의 기관에서 확보한 정보가 더 신뢰할 만하다고 진술하였다. 참가자 8은 입양인 커뮤니티에서 서로 기관에서 받은 기록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록들에는 ‘○○ 앞에서 발견’과 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정보는 기관에서 보호를 받던 동안 관찰되거나 기록된 내용뿐이에요. 예를 들어 보호 기간 동안의 식사, 체중, 입소 당시 질병 같은 내용은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두부 종기나 수두 같은 상태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런 정보들은 믿을 만하다고 느꼈어요.” (참가자 4)

“보육원 쪽 기록이 더 신뢰가 가요. 왜냐하면 입양인들 대부분이 (기관 기록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보거든요. ‘경찰서 앞에서 발견됐다’, ‘병

원 앞에서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요. 저도 그런 비슷한 버전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차라리 보육원 기록을 믿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참가자 8)

이상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입양인의 기록 탐색 과정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한 서술이 기관마다 다르거나 일부 정보가 누락·왜곡되는 등 기록 간 불일치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작성 시점, 담당자의 판단, 행정적 절차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입양인들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신뢰하기 어려워졌으며, 기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했다. 참가자 4는 입양인이 기록의 진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고, 참가자 3은 불일치한 기록으로 인해 기록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주저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참가자 1과 10은 상충되는 정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제공된 기록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입양인이 정체성 탐색이나 뿌리찾기를 지치게 하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만드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대다수의 참가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정보 공개로 인해 지속적으로 기관에 기록 열람을 요청하고 있었다. 또한 입양인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탐색 경로나 정보 공개에 적극적인 담당자에 대한 소문을 공유하며 서로 정보를 확장해 나갔다. 이러한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공식 절차의 불확실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5.2.3 친생부모와의 만남

12명의 참가자 중 세 명(1, 2, 12)만이 친생 부모를 직접 만난 경험이 있었다. 이 중 참가자 2와 12는 입양기관 직원의 주선으로, 참가자 1은 보호시설 직원의 도움으로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그동안 기록을 통해서만 파악할 수 있었던 단서나 불일치 정보를 실제 가족과의 만남을 통해 확인하거나 해소할 수 있었으며, 1차 탐색의 주요 동기였던 정체성 탐색과 뿌리찾기의 목표를 충족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가자 1은 1차 기록에 적혀 있던 '경찰이 노량진 시장에서 발견했다'는 짧은 문장을 단서로 해당 경찰서를 직접 방문했다. 경찰서에서 남아 있던 자료를 확인한 참가자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인계된 보육원을 찾아갈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친생부모를 만날 수 있었다. 참가자는 기록으로만 알고 있던 부모의 얼굴과 이름을 직접 확인하면서, 입양 당시의 상황과 나이에 대한 불일치를 바로잡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참가자 1은 기록에 실제 나이보다 두 살 많게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부모와 자신 모두 또래보다 발달이 느리다고 생각하며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상담사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했지만, 친생부모로부터 실제 입양 당시 나이가 기록보다 두 살 어렸다는 사실을 듣고 오랫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비로소 해소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내가 두 살 더 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정말 해방된 기분이었죠. ‘아, 내가 부족했던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양부모님, 특히 어머니는 제가 실제 나이를 말씀드렸을 때 우셨어요. 학교에서 제가 힘들어했던 일들을 떠올리셨던 거예요. 결국 진짜 정보를 알게 되니까, 그동안의 일들이 다 상식으로 설명이 되더라고요.” (참가자 1)

참가자 2는 입양기관을 통해 친모와 연결되어 만남이 이루어졌다. 참가자는 기록에 ‘부모 이름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유기된 아이라고 오랫동안 믿고 있었으나, 친모로부터 당시 자발적으로 입양에 동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상황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의 입양동의서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 이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

“친모가 입양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했다고 들었어요. 엄마에게 직접 ‘내가 입양을 원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서명된 동의서 자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참가자 2)

참가자 12는 친모와의 만남 자리에서 기관 기록을 함께 확인하였고, 기록 내용이 실제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 참가자는 주변의 다른 입양인들이 기록 정보와 실제 상황이 맞지 않아 혼란을 겪는 사례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기록이 정확하다는 확인을 받았을 때 큰 안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친생부모와의 만남은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없었던 불일치나 의문을 해소하고, 입양인의 정체성 탐색 과정에 결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해주는 경험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입양동의서 등 핵심 기록이 누락되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

우도 있어, 기록 접근과 검증 체계의 정비가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5.2.4 장애물 및 건의사항

참가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장애물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다수의 참가자는 기관 중심의 강한 통제 구조를 지적하였다. 앞선 장에서 언급했듯, 기록 열람의 범위와 방식이 담당 사회복지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졌으며, 이는 이용자가 기록 접근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특히 참가자 4는 기록을 열람하는 내내 기관의 통제 아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참가자는 자신의 기록을 직접 만질 수 없었고, 사회복지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겨주는 방식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험은 기록의 소유자이자 당사자인 입양인이 정보 이용 과정에서 배제되고, 여전히 기관이 기록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쥐고 있음을 시사한다.

“가장 불편했던 건 그거였어요. 관리자와 함께 제 기록을 보는데, 그 사람이 직접 넘겨주면서 보여줬거든요. 새 정보는 거의 없었지만, 제 기분을 맞춰주려는 듯 한 장만 복사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복사를 하러 나가면서 서류철 전체를 들고 나가더라고요. 제 기록인데, 혼자 볼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는 느낌이었죠. 한 장만 복사할 거라면 나머지는 두고 가도 되잖아요. 모든 걸 챙겨 나가길래 통제권이 여전히 그쪽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려가 부족했고, 그 자리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참가자 4)

둘째, 다섯 명의 참가자는 기관의 불투명한 정보 제공 방식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지적하였다(2, 3, 6, 10, 11). 기관들은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정보 제공을 제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에 근거한 조치인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일부 기관은 단지 "정보가 있지만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참가자들은 기록의 존재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경험은 기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정보 접근 과정에서의 심리적 좌절감을 더욱 심화시켰다. 이에 참가자 2는 입양인의 정체성과 뿌리찾기를 지원하기 위해 보다 폭넓은 정보 공개가 가능하도록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입양인들에게 제공되는 기록에는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담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한국 사회가 사생활 침해에 민감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서로를 곤란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연락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관이 핵심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 정작 당사자는 접근할 수 없게 두는 건 옳지 않아요." (참가자 2)

한편, 참가자 7과 10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본인과 관련된 기록조차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참가자는 기관이 일부 정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제공하지 않는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가 입양인의 정보 접근 의욕을 약화시키고 탐색 과정을 지연시킨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에요. 그게 정말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엄격하거든요.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겠다'고 제가 서약하면, 그걸 전제로 정보를 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제 입양 배경 정보가 파일에 있다고 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 페이지는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있다면 민감한 부분만 가리고 사본을 줄 수도 있잖아요." (참가자 10)

참가자 6과 11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 접근의 주요한 장애물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법적 제한 그 자체보다, 어떤 정보가 공개되고 비공개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더 큰 문제로 보았다.

"그냥 좀 더 투명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출생 부모 정보는 있지만 법 때문에 공유할 수 없다' 이렇게요. 정보가 있지만 법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말해주는 게, '정보가 없다고만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면 입양인은 훨씬 덜 혼란스러울 거예요. '정보가 없다'고만 하면, 정말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느낌이에요." (참가자 11)

셋째, 네 명의 참가자(3, 9, 11, 12)는 기록 열람 과정에서 언어 장벽을 경험했다고 진술하였다. 참가자 9는 한국어 실력이 부족했고, 한국의 입양 절차에서 어떤 기록이 만들어지고 관리되는지 그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기관에서 열람한 원본 기록은 모두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통역사도 배정되지 않았다. 또한 통역사를 동반해 방문할 수 있다는 안내도 받지 못해 기록의 내용을 충분히 이

해하기 어려웠다고 하였다. 더불어 각 문서가 어떤 의미와 목적을 가진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 기록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언어 장벽이 있었어요. 한국어로 된 문서가 너무 많았고, 솔직히 각각의 문서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방문할 때 누군가를 동반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참가자 9)

참가자 3은 1차 기록이 모두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어 사실 번역업체에 의뢰했지만, 번역 결과가 제각각이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가장 어려웠던 건 번역이에요. 기록이 번역되지 않은 상태로 오는데, 나라별로 입양인의 언어가 다르니까 이해는 돼요. 그래도 번역 결과가 너무 달라요. 번역을 세 사람에게 맡기면 세 가지 전혀 다른 내용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구글 번역도 써봤지만 정확한지 모르겠고요. 만약 공식적인 번역이 함께 제공된다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참가자 3)

참가자 11은 모국어가 독일어이기 때문에, 기록을 열람하거나 정보를 탐색·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중의 언어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저는 영어가 모국어도 아니고, 한국어도 못하니까 이중의 언어 장벽이 있는 셈이에요. 독일어로 볼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어서, 결국 모든 탐색이나 조사를 영어로 해야 했거든요. 그게 첫 번째

어려움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못하면 혼자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참가자 11)

다수의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에 대하여 건의를 하였다. 첫째, 기관 직원들의 태도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참가자 12는 14살 때 입양부모와 함께 기관을 방문해 기록을 처음 마주했을 때, 감정이 북받쳐 울음을 터뜨렸다고 회상했다. 그 자리에는 또래 입양인들도 있었는데, 모두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참가자는 당시 직원들의 태도가 너무 업무적이고 형식적이어서, 감정적으로 공감받지 못한 느낌이었다고 덧붙였다.

“제가 그때 14살이었는데, 감정이 너무 북받쳐서 울었어요. 14살에게는 그 상황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모든 게 너무 벅했어요... 제 또래 여자아이들도 다 비슷했어요. 다들 힘들어했죠... 그런데 사회복지사분이 특별히 뭐라고 해주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냥 업무적인 미팅 같은 분위기였어요.” (참가자 11)

참가자 7은 친생부모를 찾기 위해 기관의 기록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참가자는 사회복지사에게 병원을 직접 방문해 기록을 확인하고 부모를 찾는 여정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사회복지사는 오히려 참가자를 낙담시키는 말을 했다고 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가도 아무것도 못 찾을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낙담했어요. 사회복지사분은 도와주려는 태도도 아니었어요. 제가

정중하게 이것저것 물어봐도 ‘부모 정보가 미상이라 도와드릴 수 없다’는 말만 계속 반복했어요. 마치 대본 읽듯이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느낌이었어요.” (참가자 7)

참가자 8은 H사 직원과 NGO 직원의 서비스 태도가 확연히 달랐다고 설명하였다. H사 직원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어디에 문의해야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안내나 도움을 주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매우 업무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반면 NGO 직원은 마치 체크리스트가 있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안내해 주었고, 필요한 기록이나 정보를 얻기 위해 어느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또 친생부모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 DNA 검사나 방송 출연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항상 똑같았어요. ‘우리한테 있는 서류는 이게 전부고, 새로운 정보는 없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다음 탐색은 전적으로 제 몫이었어요. 그들이 준 것 말고 추가 정보를 찾는 건 다 제가 해야 했죠. 서류와 관련해서는 늘 ‘이 한 장뿐이라 더 도와드릴 수 없다’였어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냥 비즈니스 같았어요. 우리는 사람이지만, 거래 대상이 아니잖아요. 너무 규정만 딱딱하게 따른다는 느낌이었어요. 차라리 ‘여기서 안 되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다른 기관에 문의해 보세요’ 같은 제안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반면에 I사나 G사(NGO) 같은 단체

에 가면 ‘TV 프로그램을 통해 시도해볼 수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고 알려줘요. 그런 점에서 보면, 다른 단체들은 이미 단계별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도움을 요청하면 ‘먼저 홀트나 KSS에서 파일을 받아보고,2) 그다음에는 이걸 해봅시다’처럼 절차가 딱 정리되어 있거든요. 그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참가자 8)

둘째, 기록의 디지털화 필요성이다. 네 명의 참가자는 기록이 언제든 소실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냈다. 입양인 커뮤니티를 통해 기관의 폐쇄나 화재로 인해 기록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기록의 영구적 보존과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한국어랑 영어를 모두 인식해서 스스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참가자 2)

“보육원이 몇 번 이전했다고 하더라고요. 2000년에 처음 갔을 때는 처음 보는 기록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갔더니 ‘파일을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종이기록은 가능한 한 빨리 디지털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더 이상의 정보 유실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참가자 1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입양인의 정보 탐색 과정에는 제도적·언어적·심리적 한계가 복합

2) ‘홀트(Holt)’와 ‘KSS(Korea Social Service)’는 한국에서 국제입양을 주도했던 민간 입양기관으로, 해외 입양인의 초기 기록(출생 정보, 발견·인계 경위, 의료 기록 등)을 보관하고 있는 주요 기관을 의미한다. 해외 입양인은 보통 이 두 기관 중 자신의 입양 절차를 담당한 기관으로부터 기록 사본을 먼저 요청하게 된다.

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가자들은 기록 열람 과정에서 기관의 통제와 불투명한 정보 제공, 법적 제약, 언어 장벽 등으로 인해 정보 접근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참가자들은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기록의 디지털화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입양정보서비스가 단순한 기록 제공을 넘어, 입양인의 권리 보장과 정체성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한다.

6.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해외 입양인의 기록 탐색은 더빈의 센스메이킹 관점에서 볼 때, 특정한 상황 속에서 출생·정체성 관련 정보를 이해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간극이 발생하고, 이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이용 전략을 시도하나, 여러 장애요인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의미 구성 과정이 차단되는 경험의 연속이었다. 논의는 이러한 의미 구성 과정을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입양인의 탐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외 입양인은 인종적·언어적 고립, 소속감 결여, 자녀 양육 과정에서의 질문 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출생 배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필요를 절감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은 내면적 간극(gap)이었다. 출생지·발견·인계 경위, 친생부모와 관련된 정보가 비어 있거나 '미상'으로 표기된 기록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과정을 거쳐 입양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구성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일부 기록은 임의 기재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불일치하거나 모순적이어서, 입양인은 여러 조각의 단서를 연결해 자신만의 생애서사를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 간극은 단순한 정보 부족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 없다는 존재론적 공백"으로 작동했다.

입양인은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다양한 이용 전략을 시도했다. 첫 단계에서는 입양부모가 보유한 기록을 토대로 자신의 생애 초기 정보를 추적하였으나, 이 기록 자체가 불완전하거나 모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보호시설·병원·경찰서 등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DNA 검사, SNS 검색, 방송 제보, 해외 입양인 커뮤니티를 통한 정보 공유 등 비공식 경로까지 적극 활용하게 되었다. 단편적인 단서를 연결해 의미를 구성하는 이 과정은 더빈이 말한 '간극을 메우기 위한 의미 구성 행위'에 해당하며,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정체성 재구성이라는 목적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 구성 과정은 여러 장애요인에 의해 반복적으로 가로막혔다. 특히 기록의 누락, '미상' 표기, 기관 간 불일치 등 정보 자체의 문제는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 전제('사실의 일관성')를 훼손하였다. 정보 공개 범위가 담당자 재량에 좌우되는 구조도 문제였다. 동일한 제도 안에서도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열람 가능 정보, 사본 제공 여부, 메모나 촬영 허용 등이 달라졌으며, 이는 탐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기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다. 또한 대부분의 기록이 한국어로만 제공되는 현실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입양인의 탐색을 구조적으로 제약했으며, 이해되지 않는 문구·법적 용어·행정적

서술은 또 다른 의미적 간극을 생성하였다. 기록의 누락과 불투명성이 누적되면서 입양인은 감정적 소모, 심리적 피로, 무력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했고, 이는 탐색을 중단하고 싶다는 정서적 반응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입양인의 센스메이킹 과정이 반복적으로 차단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서비스·제도 개선은 간극 해소를 직접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출생·발견·인계 경위 등 기초 정보에 대한 기록 일원화와 교차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정보 공개 범위, 비공개 근거, 사본 제공 절차 등은 표준화하여 담당자 재량에 따른 변동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기록 열람 전후로 정서적·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트라우마·인종 감수성 교육을 받은 전문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외 입양인의 언어 환경을 고려해 다언어 서비스와 전문 통·번역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이는 간극 해소의 가장 실질적 조건이다. 다섯째, 기록 소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디지털 장기보존 체계와 온라인 열람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입양인 커뮤니티와 NGO가 수행하던 탐색 정보 제공 기능을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공식 탐색 절차를 안내하는 표준화된 지원체제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해외 입양인의 기록 탐색은 특정 상황에서 발생한 정체성 관련 내면적 간극을 메우기 위한 의미 구성 과정이며, 이 과정은 제도적·언어적·정보적 장애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중단되고 있었다. 따라서 정부와 기관은 입양인을 단순한 정보 이용자가 아니라 정체성 회복의 주체로 인식해야 하며, 탐색 과정에서의 간극 해소가 가능하도록 정보

접근성·정확성·예측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기록의 관리·공개·해석에 대한 책임 역시 개인이 떠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공적 과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7. 결론

본 연구는 해외 입양인의 정체성·출생정보 탐색 과정을 더빈의 센스메이킹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입양기록이 개인의 자기 이해와 생애사 회복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입양인의 탐색은 특정 상황 속에서 자신의 기원과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촉발되고, 그 과정에서 출생지·친생가족·발견·인계 경위 등의 정보가 부재하거나 불일치함으로써 깊은 간극이 형성되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간극은 단순한 사실 확인 차원의 부족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설명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체성 중심의 공백이었다.

입양인은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공식 기록 열람, 기관 방문, 병원·보호시설 조회, DNA 검사, 커뮤니티 정보 교환 등 다양한 이용 전략을 시도했으나, 기록의 불완전성·담당자 재량·언어 장벽·정서적 부담 등 다층적 장애요인이 의미 구성 과정을 지속적으로 차단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입양인의 정보추구가 행정 문서 열람 수준을 넘어, 생애사 재구성과 정체성 회복을 위한 본질적 탐색 과정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해외 입양인의 기록 접근권 보장은 단순한 서비스 개선이 아니라, 간극을 줄이고 의미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문제로 이해되어야 한다. 입양기록의 일원화 이후 기록정보서비스를 담당하게 된 아동권리보장원은 행정적 관리 기관을 넘어, 입양인의 정체성 탐색을 지원하는 중심 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기록 간 교차 검증 체계 마련, 열람 절차의 표준화, 다언어 서비스 강화, 정서·상담 지원, 디지털 장기보존 기반 확충 등 센스메이킹을 지원하는 통합적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표본 규모에 따른 한계가 있지만, 해외 입양인의 경험을 기존의 정보행태 연구가 아닌 정체성 기반의 정보탐색·의미 구성 과정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해외 입양인의 정보추구를 다룬 연구가 국내외 모두에서 매우 드문 상황에서, 본 연구는 정보행태 분야에 새로운 분석 단위를 제시하고 정체성·생애사 맥락을 정보추구 연구의 주요 축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크다.

또한 본 연구는 더빈의 센스메이킹 이론을 개

념적·방법론적 틀로 활용함으로써, 복잡적이고 정서적으로 중첩되며 비연속적으로 진행되는 탐색 과정을 '상황-간극-이용-장애요인'이라는 구조로 체계화할 수 있었다. 이는 개인 경험 중심의 정보추구 맥락을 설명하는 데 센스메이킹 이론이 유효한 분석 도구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사례로, 향후 질적 정보행태 연구에서 이 이론의 설명력과 적용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입양 시기·국가·성별·세대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한 비교 연구를 통해, 입양인의 정체성 탐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간극의 형태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의미 구성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외 입양인의 정체성 회복을 지원하는 맞춤형 기록정보서비스와 정책적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해인 (2024). "입양 기록 관리 부실" 뉴스타파 보도에 빨간 입양인들 항의 시위. 뉴스타파. 출처: <https://newstapa.org/article/8W76t>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369호, 시행 2025. 07. 19.]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12호, 시행 2025. 07. 19.]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53호, 2023. 7. 18., 제정]
- 문준아 (2025). '아이를 잃은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예요'...고아로 둔갑해 해외 입양된 '실종' 아동들. BBC 코리아. 출처: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kgldmldmvo>
- 뿌리의집 (2021). 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사례 보고서. 뿌리의집.
- 안재진, 조경미, 김승복, 이지연 (2012). 성인입양인의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가족복지학,

- 37, 7-38.
- 이미선 (2002). 해외입양인의 자아정체감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14, 114-144.
- 정다민 (2022). 해외 입양: 입양인들은 언제쯤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 BBC 코리아.
출처: <https://www.bbc.com/korean/features-64035451>
- 정애리, 권지성, Schwekendiek, D. (2008).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및 효율적 입양사후서비스 제공방안 (GOV_2014_PRISM_006692). 보건복지가족부.
- Basow, S. A., Lilley, E., Bookwala, J., & McGillicuddy-DeLisi, A. (2008). Identity develop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Korean-born adoptees in the U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8(4), 473-480. <https://doi.org/10.1037/a0014450>
- Clemens, R. G. & Cushing, A. L. (2010). Beyond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in deeply meaningful and profoundly personal context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47(1), 1-10.
<https://doi.org/10.1002/meet.14504701228>
- Cushing, A. L. (2010). I just want more information about 'who I am': The search experience of sperm-donor offspring, searching for information about their donors and genetic heritage. *Information Research*, 15(2).
- Darnell, F. J., Johansen, A. B., Tavakoli, S., & Brugnone, N. (2017). Adoption and identity experiences among adult transnational adoptees: A qualitative study. *Adoption Quarterly*, 20(2), 155-166. <https://doi.org/10.1080/10926755.2016.1217574>
- Dervin, B. (1983). *An Overview of Sense-Making Research: Concepts, Methods, and Results to Date*. Indiana: Indiana University.
- Dervin, B. (1992). From the mind's eye of the user: The sense-making qualitative-quantitative method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Information Management*, 9(1), 61-84.
- Dervin, B. (1999). On studying information seeking methodologically: The implications of connecting metatheory to method.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35(6), 727-750.
[https://doi.org/10.1016/S0306-4573\(99\)00023-0](https://doi.org/10.1016/S0306-4573(99)00023-0)
- Hoffman, J. & Pena, E. V. (2013). Too Korean to be White and too White to be Korean: Ethnic identity development among transracial Korean American adoptees. *Journal of Student Affairs Research and Practice*, 50(2), 152-170. <https://doi.org/10.1515/jsarp-2013-0012>
- Huh, N. S. & Reid, W. J. (2000). Intercountry, Transracial Adoption and Ethnic Identity: A Korean Example. *International Social Work*, 43(1), 75-87.
- Mahlstedt, P. P., LaBounty, K., & Kennedy, W. T. (2010). The views of adult offspring of sperm

- donation: essential feedback for the development of ethical guidelines within the practice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n the United States. *Fertility and Sterility*, 93(7), 2236-2246. <https://doi.org/10.1016/j.fertnstert.2008.12.119>
- March, K. (1995). Perception of adoption as social stigma: Motivation for search and reun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53-660. <https://doi.org/10.2307/353920>
- Meier, D. I. (1999). Cultural identity and place in adult Korean-American intercountry adoptees. *Adoption Quarterly*, 3(1), 15-48. https://doi.org/10.1300/J145v03n01_03
- Park, S. H. (1995). Spatial distribution of Korea-born adopte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30(4), 411-28.
- Ravelingien, A., Provoost, V., & Pennings, G. (2013). Donor-conceived children looking for their sperm donor: What do they want to know?. *Facts, Views & Vision in ObGyn*, 5(4), 257.
- Sants, H. J. (1964). Genealogical bewilderment in children with substitute parent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37(2), 133-141. <https://psycnet.apa.org/doi/10.1111/j.2044-8341.1964.tb01981.x>
- Shiao, J. L. & Tuan, M. H. (2008). Korean adoptees and the social context of ethnic explor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3(4), 1023-1066. <https://doi.org/10.1086/522807>
- Song, S. L. & Lee, R. M. (2009). The past and present cultural experiences of adopted Korean American adults. *Adoption Quarterly*, 12(1), 19-36. <https://doi.org/10.1080/10926750902791946>
- Stein, L. M. & Hoopes, J. L. (1985). *Identity Formation in the Adopted Adolescent*. Washington: Child Welfare League of Amer.
- Tieman, W., Van Der Ende, J., & Verhulst, F. C. (2008). Young adult international adoptees' search for birth pare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5), 678-687. <https://doi.org/10.1037/a0013172>
- Triseliotis, J. P. (1973). *In Search of Origins: The Experiences of Adopted Peopl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Turner, A. J. & Coyle, A. (2000). What does it mean to be a donor offspring? The identity experiences of adults conceived by donor insemination and the implications for counselling and therapy. *Human Reproduction*, 15(9), 2041-2051. <https://doi.org/10.1093/humrep/15.9.2041>
- Walton, J. (2015). Feeling it: Understanding Korean adoptees' experiences of embodied identity. *Journal of Intercultural Studies*, 36(4), 395-412. <https://doi.org/10.1080/07256868.2015.1049985>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Act on Intercountry Adoption [Act No. 19553, July 18, 2023].
- Ahn, Jaejin, Cho, Kyungmi, Kim, Seungbok, & Lee, Jiyeon (2012).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adult adopte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37, 7-38.
-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MOHW Ordinance No. 1112, enforced July 19, 2025].
- Jeong, Ae-ri, Kwon, Jiseong, & Schwekendiek, D. (2008).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Overseas Korean Adoptees and Effective Post-Adoption Services (GOV_2014_PRISM_006692).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 Jung, Damin (2022). Overseas adoption: When will adoptees finally face the truth? BBC Korea. Available: <https://www.bbc.com/korean/features-64035451>
- Kang, Hyein (2024). Adoptees protest following Newstapa report on "Poor management of adoption records." Newstapa. Available: <https://newstapa.org/article/8W76t>
- Koroot (2021). Report on Human Rights Violations in Past Intercountry Adoption Procedures. Koroot.
- Lee, Misun (2002). Factors influencing the self-identity of Korean overseas adoptees.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4, 114-144.
- Moon, Junah (2025). "We didn't lose our children – they were taken from us": Missing children adopted abroad after being falsely registered as orphans. BBC Korea.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0kglmdldmvo>
- Special Act on Domestic Adoption [Act No. 20369, enforced July 19, 2025].

